

「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」 개정 관련 적용 시점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

안녕하세요.

국토교통부 「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」 개정(2026.6.26. 시행)과 관련하여 결로방지 성능평가 업무 적용 시점 및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적용 시점

개정 기준 부칙 제2조(적용례)에 따라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따라서,

- 2026.6.26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 : 개정 기준 적용
- 2026.6.26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완료 건 : 종전 기준 적용

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.

2. 주요 변경사항

① 결로방지 성능평가 기준 지역 구분 변경

- 결로방지 성능평가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체계 정비
- 지역별 적용 외기온도 기준
 - 중부1 : -20°C
 - 중부2 : -15°C
 - 남부 : -10°C
- 사업 대상 지역에 따른 TDR(온도차이비율) 기준 적용 필요

② 시스템 창호 및 커튼월 평가 기준 신설

- 기존 일반 창호 기준 외에 시스템 창호 및 커튼월 평가 기준 신설
- 유리, 수평부재, 수직부재, 개폐창짝 등 구성 부위별 TDR 평가 적용
- KS F 2295 창호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등을 준용하여 평가

③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 및 결과서 서식 신설 및 변경

- 「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」(별지 제1호)
- 「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」(별지 제2호)

상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로방지 성능평가 업무 진행 시 적용 기준 검토 부탁드립니다,
개정 적용 대상 사업은 변경 기준 및 서식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